54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

▶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및 방역총괄과입니다.

내역사업명	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친환경농업 직접지불	농림축산식품부	친환경농업과	과 장 김완수 사무관 박원태	044-201-2431 044-201-2439
	시 도	시도담당과	시도담당자	
	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	인증기관	인증담당자	
친환경안전축산 직접지불	농림축산식품부	방역총괄과	과 장 김태융 사무관 나인지	044-201-2351 044-201-2355
	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	농업경영정보과	과 장 한종현 사무관 이광희	031-463-3204 031-463-1555

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

Ⅰ. 사업개요

1. 목 적

○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,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

2. 근거법령

○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

○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16조~제23조

3. 성과목표 및 지표

○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(무농약 이상) 비율을 '15년까지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의 12.0%까지 확대

성과지표	2014 목표치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산출 시기	측정방식
		'11	'12	'13		
▪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비율(%)	10.0	6.7	7.5	8.0	'15.3	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/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 × 100 * 무농약 이상

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1년까지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이후
합 계	221,033	43,595	37,574	26,909	계속
국 고	221,033	43,595	37,574	26,909	계속
지방비					
융 자					
자부담					

Ⅱ.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○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·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
* 저농약인증의 경우 '10년 이전에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에 따라 저농약 인증을 받아 신청일 현재 인증이 유효한 농업인

○ 다음 각 호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

2. 지원대상

○ 2014년 사업기간(1월~12월)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

○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

- 사업기간 중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
-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(양액)재배, 버섯재배 필지 (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)
-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,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
-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

3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○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

4.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

○ 자금재원 : 농특회계

○ 지원형태 : 지자체 보조(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), 국고 100%

○ 지급단가

- 논 : 유기 600천원/ha, 무농약 400, 저농약 217
- 밭 : 유기 1,200천원/ha, 무농약 1,000, 저농약 524

*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,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 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

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○ 농가(경영체)당 지급한도 면적 : 0.1~5.0ha

* 동일 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(5.0ha)를 초과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

○ 지급 기간 및 방법 :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~5년간만 지급(불연속인 경우 3~5회만 지급)

- 유기농산물 : 5년(5회), 무농약·저농약농산물 : 3년(3회)

* 단, '10년 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

-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,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하되, 유기 인증의 경우에는 총 5년간 지급. (단, 기존 인증단계(저농약, 무농약)에서 유기재배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 직불금 수령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횟수만 지급)
- 신청기간 이후(당해년도 사업기간 중)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

Ⅲ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1. 사업신청단계

사업대상자

○ 사업신청

-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·면·동에 신청서 제출

* **신청서류 :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사업대상자 등록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,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)**

* ‘14년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, 인증기관, 인증종류,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신청 변경신고서[별지 제3호 서식]를 작성하여 신청기관(읍·면·동)에 제출하도록 하고, 사업기간 중 인증이 만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향후 인증 만료 전에 인증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공지

○ 신청기간 : ‘14. 3. 1 ~ 3. 31

○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

- 신청농지가 같은 시·군·구내의 2개 이상 읍·면·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에 신청서 제출

* 신청농지가 시·군·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에 신청서 제출

<사업시행지침 시달>	→	<사업신청 홍보>	→	<사업신청>
농식품부(‘13.12월)		지자체(‘14.1~3월)		친환경농업인(‘14.3월)

* ‘14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일 이후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’15년에 사업신청 가능

2. 사업자 선정단계

가. 사업대상자 선정(시·군·구)

○ 시장·군수 등은 농업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

- 신청자격, 논밭구분, 인증단계별 지급단가, 농가당 지급한도, 지급기간 초과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조정

나. 신청내용 변경

○ 변경대상

- **(사업대상자 변경)**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,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

* 사업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함

- **(인증기관)**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

- **(인증종류)**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(유기·무농약·저농약)가 변경된 경우

- **(농지현황)** 신청농지의 주소변경, 필지수·면적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 상의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

* 인증대상자,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

○ 변경신청 기간 :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

○ 신청방법 : 해당 시 군·구청장(읍·면·동)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

*** 신청서류 :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신청 변경신고서[별지 제3호 서식],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등 승계관련 서류**

3. 이행점검 단계

○ 시·군·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대상자가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9조 및 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여부 및 인증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

○ 점검내용 : 인증번호, 인증필지·면적 등 일치여부, 인증기준 준수 여부(현장조사), 농가경영체등록 여부, 지급한도 초과 여부, 중복신청 여부 등

- 인증기관에서는「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(농관원 고시)」별표5(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)에 따라 최소한 연1회 생산과정조사를 실시

4.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

가.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(시·군·구)

○ 시 군·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통보 결과를 참조하여 이행점검을 마감하고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

- 인증취소, 인증기간만료, 신청포기, 인증면적 불일치 등 부적격자(필지) 제외

나.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(농림축산식품부 → 시·군·구)

○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친환경농업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('14. 11.16~12월)

○ 각 시도(시·군·구)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('14. 12월)

5. 자금집행 후 관리단계

가. 사후관리

○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자가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

-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내(1.1~12.31) 인증취소, 인증만료,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
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종료(10.31) 후에도 당해연도 말(12.31)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를 해당 시·군·구에 통보

나. 제재

○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,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

○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(농특회계)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

- 환수절차 : 반납고지서 발급(시·군·구) → 농업인 등 반납 → 시·군·구 계좌 → 시·도 계좌 → 농특회계 계좌(납입)
- 각 시·도지사는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

Ⅳ.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

1.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

○ 2015년도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붙임 [별지 제1호 서식]의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에 제출('15.3.1 ~ 3.31)

[별지 제1호 서식]

(앞쪽)

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

처리기간
60일

①신청인	성명(법인명)			주민(법인)등록번호		
	대표자명					
	주 소			전화번호		
②인증현황	인증구분		인증번호		인증기관	

③신청농지 현황

구분 (논·밭)	인증 종류	품 목		농지소재지				지목 (공부상)	재배 면적 (㎡)	쌀소득 직불제 대상여부 (○, ×)	농업 경영체 등록여부 (○, ×)	과거 지급 횟수
		대분류	소분류	시·군	읍·면	리·동	지번					
논												
밭												
합계												

④입금계좌	은행명 :	예금주 :	계좌번호 :

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」 제20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며,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☑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☑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 등)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☑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※ 구비서류	수수료
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	없 음

(뒤 쪽)

작 성 방 법

① 신청인 :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신청인(법인 포함)의 인적사항을 기재

*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동시 기재

② 인증현황 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현황을 기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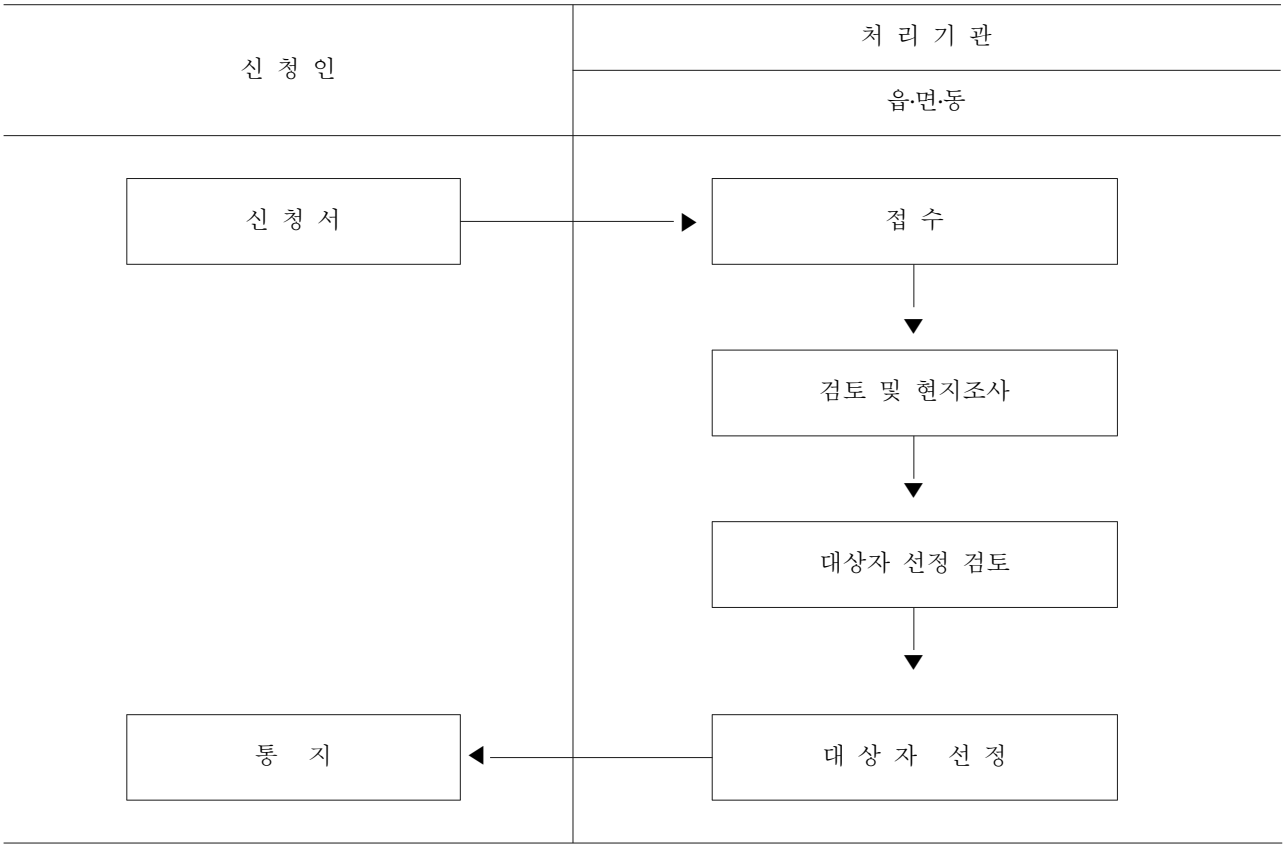
③ 신청농지 현황

- 논·밭 구분 :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, 그 외의 농지는 밭
- 인증종류 : 유기, 무농약, 저농약 중 하나를 기재
- 품목별 분류 : (대분류)곡류, 채소, 과수, 기타 중 하나를 (소분류)는 인증서 상 품목명 기재
- 쌀소득직불제 대상여부 : 당해연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대상 농지 여부를 기재
- 농업경영체등록 :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를 기재

④ 입금계좌 :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을 수령할 신청 농업인(법인)의 계좌를 기재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②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

Ⅰ. 사업개요

1. 목 적

○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소득유지 등을 동시에 추구하며,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

2. 근거법령

○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

○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(국내지원 정책의 시행)

3. 성과목표 및 지표

○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확대를 통해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을 유도하고 친환경 주요 축산물의 생산 비중을 2015년까지 전체 주요 축산물 생산량의 15%로 확대

성과지표	2014 목표치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산출 시기	측정방식
		'11	'12	'13		
▪친환경 주요축산물 생산량 비중율(%)	14.0	12.9	13.3		3월말	○전체 주요 축산물 생산량 대비 친환경 주요축산물 생산량 비중 *친환경 주요축산물(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우유, 계란)

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1년까지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이후
합 계	7,000	7,000	10,025	16,283	계속사업
국 고	7,000	7,000	10,025	16,283	계속사업
지방비	-	-	-	-	-
융 자	-	-	-	-	-
자부담	-	-	-	-	-

Ⅱ.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○ 신청일 현재『축산물위생관리법』제9조의 규정에 의한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『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』제19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○ HACCP 농장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지정 또는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

-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지정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지정 또는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

3. 지원기준 및 지급기간 산출방법

○ 지원기준

-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3년간만 지급(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)

○ 지급기간 산출방법

-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의 종류를 달리한 경우에도 3년간만 지급
-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3년간만 지급
- 3년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
- 가족이 3년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○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의 축산물 생산을 위한 비용

5.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

○ 자금재원 : 농특회계(농특세 사업계정)

○ 지원형태 : 국고 보조 100%

○ 지급대상 기간 : '13.11.1 ~ ‘14.10.31

- 동 기간동안 HACCP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친환경(유기·무항생제) 축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한 거래내역서(정산서, 판매내역서 등)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농가에서 입증하여야 함
-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(농촌진흥청,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)를 제출하여야 함.
- 산란계는 출하량 입증이 어려울 경우 인증 마리수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

·산출서식 : 인증 마리수 × 20개 × 단가 × 개월 수

* '14.11.1~'15.10.31까지는 '15년 사업예산에서 지원 추진

○ 지급단가

- 한우 : 유기 170,000원/마리, 무항생제 65,000원/마리

* 육우는 한우의 50% 감액 지급

- 젖소(우유) : 유기 50원/L, 무항생제 10원/L (우유 1ℓ는 1.03kg임)
- 돼지 : 유기 16,000원/마리, 무항생제 6,000원/마리
- 산란계(계란) : 유기 10원/개, 무항생제 1원/개
- 육계 : 유기 200원/마리, 무항생제 60원/마리(토종닭의 경우는 육계의 30% 증액 지급)
- 오리 : 유기 400원/마리, 무항생제 120원/마리
- 오리알 : 유기 20원/마리, 무항생제 2원/마리
- 메추리알 : 무항생제 4원/10개
- 산양 : 무항생제 (식육) 4,584원/두, (유) 34원/리터 ₩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○ 농가당 지급한도액 : 20백만원/연간

-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20%를 인센티브로 추가지급

○ 지급 단위 : 천원(천원 단위 이하 절사)

○ 지급 방법

- '13.11.1~'14.10.31 실적 : 12월에 지급

* 다만, 산란계의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을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

(1개월 미만은 제외)

-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상위 인증단계로 변경될 경우에는 신청당시 인증 종류로 지급하고, 하위 인증단계로 변경 시에는 변경된 인증 종류로 지급
- 직불금은 친환경인증과 HACCP 지정 유효기간에만 지급
-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 친환경 인증 취소, HACCP 지정 취소, 유효기간 종료 이후의 기간은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음
- 표시정지를 받은 기간 중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음
- 하반기 분 신청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잔여예산의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지급

·지급비율(%) : (예산액/신청액)×100

Ⅲ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1. 사업신청단계

사업희망 농가

○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 교부한 HACCP 지정서 사본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(사무소장)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(별지 제1호 서식)

2. 사업자 선정단계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 선정(‘14.2.14)

○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에 의해 농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·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·축산물품질평가원 등(이하 “관련기관”이라 함)에게 보고(통보) (농관원→ 관련기관 ‘14.2.21)

○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사업을 신청한 신청인에게는 [별지 제2호 서식]에 의해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 (농관원 → 사업대상자, ’14.2.28)

3. 자금배정 단계

사업 대상자

○ [별지 제3호 서식]에 의해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원 자금을 신청

- 보조금 지급 신청(사업대상자 → 농관원, 11.1~11.11)

<사업비 집행 및 정산>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○ 농식품부로부터 배정된 사업비 지급(농관원 → 축산농가, 11~12월)

- 사업비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지급대상 기간 내 입증된 생산·판매 실적에 대한 보조금을 계좌에 입금

4. 이행점검단계

《사후관리》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○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점검 실시

- 친환경 인증 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

○ 직불금 신청 및 지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

○ 자금 지급시에는 HACCP 인증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속 여부를 확인

○ 친환경(유기·무항생제) 축산물의 생산·판매실적을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관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 단계별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하여 농가에서 입증하도록 하고, 생산·판매실적을 확인

○ 사업 포기자 발생시 추가 대상자를 조속히 선정하여 사업비 불용 최소화

관련기관

○ 농림축산검역본부,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지급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또는 농관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

《제재》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○ HACCP지정이 취소되거나,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18조의2에 의거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

○ 사위(詐僞)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농업인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, 향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참여를 제한

○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(농특회계)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

Ⅳ. 2015년도 사업신청 안내

○ 2015년도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[별지 제1호 서식]에 의한 신청서를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('15.1월)

[별지 제1호 서식]

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

신청인	성 명		생년월일	
			자 택 전 화	
	주 소		휴 대 전 화	
			e-mail	
농 장 상 황	농 장 명		사업자등록번호	
	농장전화		대 표 자 명	
	Fax		대표자생년월일	
	설 립 일	년 월 일	대표자 연락처	
	구성원수	명	대표자 e-mail	
입금계좌	은행명 :		예금주 :	계좌번호 :

축 종	인증 종류	농 장 소 재 지				사육 두수	인증 두수	예 상 출하량 (단위)	예 상 금 액 (천원)
		시·군	읍·면	리·동	지번				
합 계									

농림축산식품부의 ‘14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시행지침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)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(사무소)장 귀하

※ 구비서류 : 1. HACCP 지정서 사본 1부.
2.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 1부.

수수료
없음

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

[별지 제2호 서식]

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선정통지서

①신청인	성명(법인명)			주민(법인)등록번호		
	대표자명					
	주 소			전화번호		
②입금계좌	은행명		예금주		계좌번호	

③지급대상 농지 현황

구분 (논·밭)	인증 종류	품 목		농지소재지				지목 (공부상)	재배 면적 (㎡)	쌀소득 직불제 대상농 지여부 (○, ×)	보조금 예상액 (원)
		대분류	소분류	시·군	읍·면	리·동	지번				
논											
밭											
합계											

※ 향후 이행점검결과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'14년 중 인증이 만료예정인 경우 반드시 인증을 연장하여야 하며, 사업대상자, 인증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」 제21조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[별지 제3호 서식]

(앞쪽)

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신청 변경신고서

처리기간
30일

①신청인	성명(법인명)		주민(법인)등록번호	
	대표자명			
	주 소		전화번호	

②신청 변경사항 : ( )사업대상자, ( )인증기관, ( )인증종류, ( )농지현황

구분		당초	변경	변경일자
사업대상자	성명			
	주민(법인)등록번호			
	주소			
	전화번호			
인증기관	인증기관			
	인증번호			
인증종류	인증종류			
	인증번호			
농지현황	농지 주소			
	농지 면적			

* 사업대상자,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

③입금계좌	은행명 :	예금주 :	계좌번호 :

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신청내용(사업대상자, 인증기관, 인증종류, 농지현황)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,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☑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☑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 등)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☑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※ 구비서류	수수료
1.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. 2.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(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)	없 음

(뒤 쪽)

작 성 방 법

① 신청인 :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변경 신청인(법인 포함)의 인적사항을 기재

*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동시 기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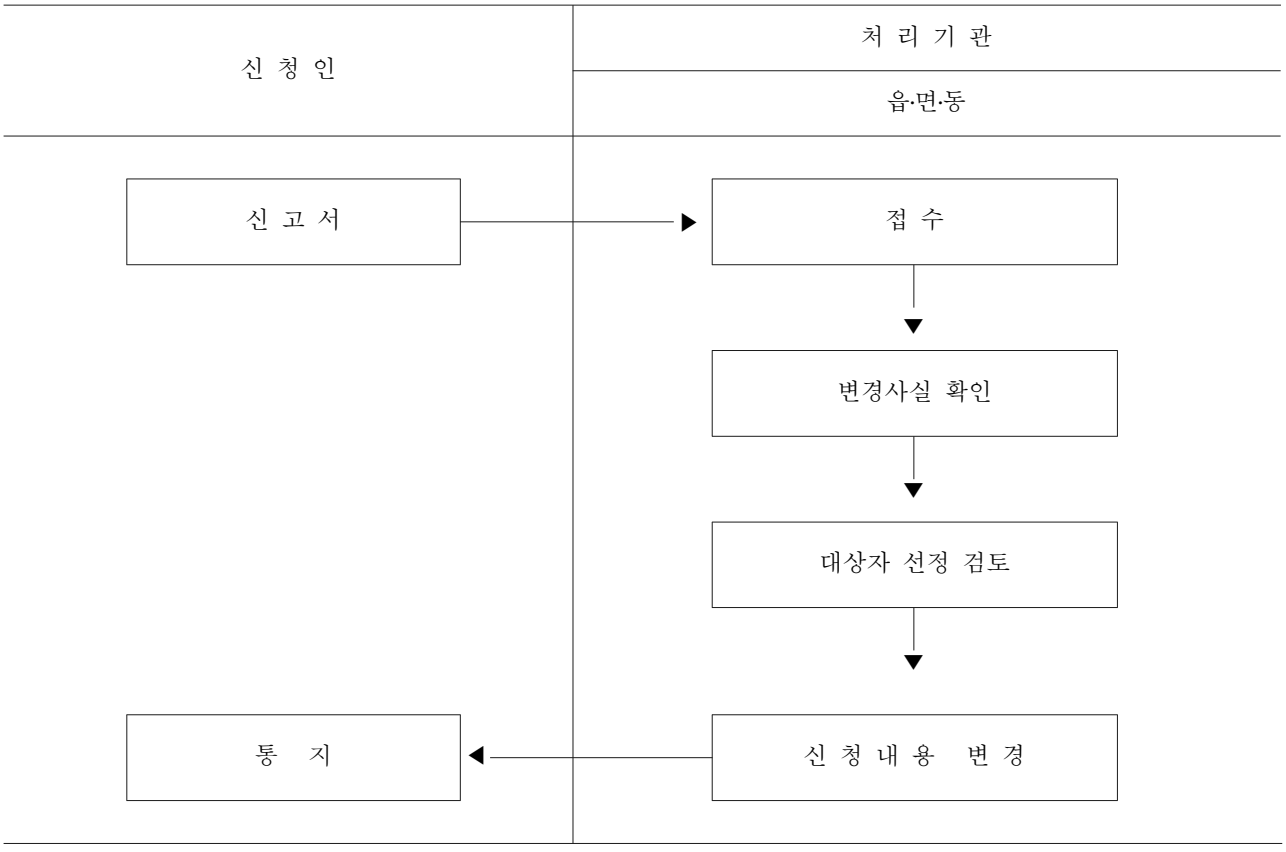
② 신청 변경사항

- 사업대상자 : 당초 신청한 농업인의 사망, 농지의 매도·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승계한 경우
- 인증기관 :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
- 인증종류 :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(유기·무농약·저농약)가 변경된 경우
- 농지현황 : 신청농지의 주소변경, 필지수·면적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

③ 입금계좌 : 신청내용 변경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할 농업인의 계좌를 기재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②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

[별지 제2호 서식]

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사업대상자 선정통지서

1. 신청인

신 청 인		농장명		대 표 자 성 명	
주 소				연 락 처 (전화, 휴대폰)	

2. 세부대상 명세

축종	유기·무항생제 인증		HACCP 지정일	사 육 두 수	인 증 두 수	예 상 생산량	보조금 예상액 (천원)	비 고
	인 증 종 류	인 증 연월일						

농림축산식품부의 '14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귀하가 금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, 앞으로 인증기준 이행여부 점검 등을 거쳐 최종 사업비가 확정 지원됨을 알려 드립니다.

2014년 월 일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(사무소)장 직인

[별지 제3호 서식]

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원 자금 신청서

신청인	성 명		생년월일	
			자 택 전 화	
	주 소		휴 대 전 화	
			e-mail	
농 장 상 황	농 장 명		사업자등록번호	
	농장전화		대 표 자 명	
	Fax		대표자생년월일	
	설 립 일	년 월 일	대표자 연락처	
	구성원수	명	대표자 e-mail	
입금계좌	은행명 :		예금주 :	계좌번호 :

축 종	인증 종류	농 장 소 재 지				사육 두수	인증 두수	출하량 (단위)	금액 (천원)
		시·군	읍·면	리·동	지번				
합 계									

2014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원 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단체) (서명 또는 날인)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(사무소)장 귀하

※ 구비서류 : 친환경 축산물 생산·판매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	수수료
	없음

[별지 제4호 서식]

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보조금 소요예산액

1 시도별

시도	신청농가수 (호)	사육두수 (마리)	인증두수 (마리)	예상생산량 (마리,ℓ,개)	연간소요액 (천원)	**소요액 (천원)**

* 닭, 오리 : 천마리, 우유 : 천ℓ, 계란 : 천개

2 축종별

축종	인증종류	농가수 (호)	사육두수 (마리)	인증두수 (마리)	예상생산량 (마리,ℓ,개)	연간소요액 (천원)	**소요액 (천원)**
한우	유기						
	무항생제						
	소계						
육우	유기						
	무항생제						
	소계						
젖소	유기						
	무항생제						
	소계						
돼지	유기						
	무항생제						
	소계						
산란계	유기						
	무항생제						
	소계						
육계	유기						
	무항생제						
	소계						
토종닭	유기						
	무항생제						
	소계						
총계	유기						
	무항생제						
	합계						

* 닭, 오리 : 천마리, 우유 : 천ℓ, 계란 : 천개